

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020 - 7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20. 8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‘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’ 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농업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사항

- 2019. 10. : 국비 공모 사업 선정
- 2020. 06. :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

나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
 - 사 업 자 : (주)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
 - 사업기간 : 2020년 8월 ~ 11월(4개월간)
 - 발전용량 : 29.88kw
 - 사 업 비 : 66,000천원
 - 연간수익 : 7,000천원/정도
- ※ 수익금 사용 : 양기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(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)

다. 재산의 표시

위 치	면 적	태 양 광 설치면적	용 량	사용허가신청자
가조면 기리 625-3(주차장)	699㎡	149㎡	29.88kw	(주)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

3. 관련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」 제26조
-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 제12조 제4항

4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주소 : 거창군 가조면 기리 625-3(지목 : 주차장)



<설치사례>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7. 7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[국유재산법](#)」 또는 「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(#)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[조례](#)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

제12조(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④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 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그 동의 절차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다